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4404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철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53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1.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F 발행주식 중 510,20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918,367,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의 동의하에 2019. 6.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E을, 병은 피고 회사를 각 지칭한다).

제2조(주식매매계약의 내용)

1. 본 주식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2019. 4. 17.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이하 '기존계약서'라 한다)의 매수인을 병으로 변경하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 방법 및 기일을 변경하기로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기존계약서에 따라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91,836,720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계약금을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한 것으로 한다.
3. 본 계약은 나머지 826,530,480원을 병이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병에게 본 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주식 510,204주를 이체하여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1. 병은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일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은 본 계약 체결일에 병이 지정하는 증권계좌에 매매대상 주식인 510,204주를 이체하여 양도하기로 한다.

3. 매매대금 중 잔금 326,530,480원은 2019. 6. 30.까지 병이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전체 주식을 갑이 병에게 이전함에 따라, 잔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잔금 326,530,480원에 대하여 갑을 채권자로 하고 병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9. 6. 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매매잔금 826,530,480원 중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2019. 6.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326,530,480원을 변제기 2019. 6.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잔금 326,530,480원을 2019. 12.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한편 피고 D은 2020. 1. 3.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의무를 함께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이행각서 중 이행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잔금 326,530,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잔금 326,53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1.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 C이 대표자로 있는 G 주식회사가 2019. 4. 16. H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주식 중 3,077,419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잔금 326,530,480원은 주식회사 F의 경영권이 G 주식회사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H이 2020. 4. 29. 피고 C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한 후 2020. 9. 14. 주식회사 F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J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잔금 326,530,480원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이 결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정경희, 판사 정덕기